제16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0. 3. 2.(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홍섭]

【목　　차】

1.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2010 - 11호>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0년 2월 11일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0년 2월 16일

Ⅱ.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07.12.21)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임.

Ⅲ. 주요내용

○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과 기금의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안 제2조)

- 기금의 용도: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안 제3조)
- 기금의 관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안 제4조)

○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회의 심의 기능: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

○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2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안 제11조)

Ⅵ.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34조, 제14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 제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37조의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입법예고(2010. 1. 14 ~ 2010. 2. 2)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없음

Ⅳ.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07. 12. 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안 제1조(목적)는 이 조례제정의 목적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필요조항이며,

(2) 안 제2조(기금의 조성)는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국·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안 제3조(기금의 용도), 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8조(회의), 안 제9조(간사 및 수당), 안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 안 제12조(기금결산), 안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는 이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이고, 제2호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이며, 제3호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으로서 **실제 위 각 호의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옥외광고정**

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5조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3 (생략)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3 (생략)

(5) 그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1.7.24, 2002.12.30, 2004.12.23, 2007.12.21, 2009.4.22>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설치·표시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기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표시 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이를 수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 규격, 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 창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7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7.24, 2007.12.2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신고시·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에 각각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23, 2007.12.21>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7.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7.2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7.24>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7.24>

제20조의2(이행강제금) ① 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②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처분권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시·군·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7.2.6, 2001.11.22, 2005.6.23, 2008.7.9>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1997.2.6, 2001.11.22, 2005.6.23>

③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1997.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1.22, 2008.7.9>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7.9>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8.7.9>

⑧ 시·군·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9>

⑨ 시·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08.7.9>

⑩ 시·군·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8.7.9>

⑪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는 "시·도"로, "시·군·구조례"는 "시·도조례"로 본다. <신설 2008.7.9>

제3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군·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군·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위원회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② 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 따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관할 시·군·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7.9]

제37조의2(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법 제11조의4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두는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의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08.7.9]

제37조의3(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3조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부착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한 기준은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다.
③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행사 등을 위한 지원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항에 따라 협의절차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형태 및 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표시기간만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7.9]

[별표 6] <신설 2008.7.9>

주요국제행사 및 수익금 배분비율 등(제37조의2 관련)

1.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를 말한다.
   가.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 및 방법
   가.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100분의 50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또는 각 조직위원회에 분기별로 배정한다.
   나.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는 100분의 20을 조직위원회에 분기별로 배정한다.
   다. 나머지 100분의 30은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물등을 설치한 시·군·구 및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행하는 그 밖의 시·군·구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각종 사업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한 시·군·구 및 그 밖의 시·군·구의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정비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배분한다.
   라. 가목·나목의 지원기간은 해당 국제행사 근거법률의 효력기간으로 한다.
   마. 배분시기 및 배분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배분액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별표 7] <신 설 2008.7.9>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7조의3제2항 관련)

종 류	규격, 형태 및 디자인	설 치 장 소 및 방 법
1.지주이용 간판	1.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8미터, 세로 8미터(총 광고면적은 288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입체형·복합형 광고면적의 산정은 최대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광고물의 상단까지 높이는 게시시설을 합산하여 도로면 수평높이에서 2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게시시설의 위치가 도로면 수평높이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높이만큼 더 높게 할 수 있다. 3. 광고물의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평면형: 광고판의 한면 이상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문자, 그림, 이미지 등 평면적 형태로 표시하는 광고물 나. 입체형: 원형, 사각기둥 등 입체형 도형이나 그 조합형태 또는 실물모형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입체적·조형적 형태로 표시하는 광고물 다. 복합형: 평면형과 입체형을 조합한 형태로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 선로변의 양측 갓길로부터 30미터 밖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하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도로·제방·하천 등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되고, 자연수목이나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등의 운전시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한다. 2. 광고물등의 상호간 이격거리는 주행방향 기준 500미터 이상으로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홍수시 유수의 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기초 바닥은

1.지주이용간판	4. 게시시설은 구조확인 및 안전도 검사를 거쳐 하나 이상의 철골 또는 파이프 등 지주로 광고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철재 게시시설은 주변환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철골 모양이 외부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체적·조형적 형태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광고물의 디자인은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광고물 디자인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하천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제방에 설치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작성한 안전검토서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방이 도로 등 다른 기능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홍보탑	1.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0미터, 세로 5미터(총 광고면적은 100제곱미터)이내로 하여야 하고, 광고물 상단까지 높이는 1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입체형·복합형 광고면적의 산정은 최대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내에 한하여 광고물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광고물등의 상단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인 전광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호 지주이용간판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한다.	1. 공항·철도역사·버스 및 항만터미널, 고속국도 휴게소(휴게소 진출입로는 제외한다) 부지 내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적색·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광고물등 간 이격거리는 두지 아니하되, 이미 설치된 광고물과 경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옥상간판	1. 표시규격은 제19조제4항을 준용한다.	1. 표시를 할 수 있는 건물층수는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준용한다. 2. 광고물등의 상호간 이격거리는 주행방향기준 20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광고물과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이 호에 따른 광고물 간의 이격거리 적용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3. 옥상간판은 고속국도변 지주이용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50미터 이내에 인접한 건물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1. 전기는 고속국도 휴게소 내 설치 전광류 광고를 제외하고는 간접조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설치특례
   가. 나들목과 분기점, 88올림픽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안성구간)에 대하여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에서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평면형 광고물등의 높이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산지지역의 경우 입체형 간판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광고물의 높이는 설치지점으로부터 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7.5.11>

제3조(기금의 설치제한) ①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